〈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 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공헤어』정보공개서

㈜피에스씨네트웍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피에스씨네트웍스 **PSC** Networks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 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 20160090 | | | |
|------------------------------|---------------------------------|---------------|-----------------|----------------------|--|--|--|
| 정보공 ⁷ 최초 등록일 및 | | 정보공개서 | 네 최초 등록일 | 2016.01.25. | | | |
|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2023.06.13. | | | |
| Γ | 『박공헤어』가맹사업본부 ㈜피에스씨네트웍스 주소 및 연락처 | | | | | | |
| 주 소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언주로 869 | (신사동) | | | |
| 전화번호 | 02-543 | -9700 | 팩스번호 | 02-543-9701 | | | |
| 가맹사업 담당부서 | 프랜차이즈사업부문 | | 담당자 전화번호 | 02-543-9700 | | | |
| 홈페이지 | http://parkgong.com/ | | 담당자 이메일 | hgkang@pschair.co.kr | |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1. 가맹본부 소개
-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별첨 서류
- [별첨 1] 2023년(22기), 2022년(21기), 2021년(20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별첨 2] 당 사가 정하는 제조브랜드 및 상품브랜드 기준
- [별첨 3] 당 사가 정하는 필수 공급 품목
- [별첨 4] 당 사가 정하는 필수 시술품목 및 권장가격 내역

1. 가맹본부 소개





박공헤어는 지붕위로 날아온 반가운 손님을 뜻합니다.

박공은 지붕이란 뜻으로, 지붕위로 날아온 반가운 손님을 상징하는 브랜드 네임입니다.

발걸음을 따라온 곳에서 우연한 만남이 시작되고 도시의 삭막함을 잠시 벗고 좋은 사람이 되어 그 동안 잊고 지냈던 감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박공헤어는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익숙함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가벼운 대답이 아니라 깊은 생각 할 줄 알고 짧은 반응이 아니라 대화를 나눌 때 행복합니다.



박공헤어는

박공혜어는, 오랜 인생에 걸쳐 미용을 사랑하고 순간 몰입하는 즐거움을 깨우치며 원칙은 고집하되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울곧고 바른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일반 정보

☞ 당 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 호 | ㈜피에스씨네트웍스 | 영업표지 | 박공헤어 외 2개 |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9 (신사동) | | | | |
| 법인설립등기일 |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편 | | |
| 2001.11.27. | 2002.01.01. | 박효원 | 02-543-9700 | 02-543-9701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2385048 | 11-2385048 사업자등록번호 211-87-05421 | | -05421 | |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 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 11.0.01 | 박효원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9 (신사동) | | | | |
| 사용인 (대표이사) | ㈜피에스씨 | 박공헤어 외 2개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대표이지) | 네트웍스 | 되 2개 | 박효원 | 02-543-9700 | 02-543-9701 |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11.0.01 | 박승철 | 바고센이 | 서울특별 | 열시 강남구 언주로 (| 369 (신사동) | | |
| 사용인 (사내이사) | ㈜피에스씨 | 박공헤어 외 2개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11-11-11-1) | 네트웍스 | 되 2개 | 박효원 | 02-543-9700 | 02-543-9701 |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11.0.01 | 박서윤 ㈜피에스씨 네트웍스 | 박공헤어 외 2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9 (신사동) | | | | |
| 사용인 (사내이사)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 ^) | | | 박효원 | 02-543-9700 | 02-543-9701 |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11.0.01 | 조순옥 | 바고센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9 (신사동) | | | | |
| 사용인 (감사) | ㈜피에스씨 | 박공헤어 외 2개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64) | 네트웍스 | 되 2개 | 박효원 | 02-543-9700 | 02-543-9701 |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 | | 서울특 | 특별시 성동구 서울숲 | ÷4길 12-7, | | |
| | ㈜스타힐스뷰티 | 박승철위그 | 2 | 2층(성수동1가, 스타 | 힐스) | | |
| 계열회사 | [[[[[[[[[[[[[[[[[[[[| 스투디오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 박서윤 | 070-4881-0929 | 02-511-3310 | | |
| | 법인등록 | 루번호 | 110111-644898 | 33 사업자등록번호 | 397-87-00720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 없음 : 당 사는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 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박공헤어』 | |
| 상 호 | 『박공헤어』 <u>점</u> | |
| | 바라 바air |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103412940000호 |
| 상표(서비스표) | PARKGONG |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103390090000호 |
| 광 고 | 1. 가맹본부 소개 참조 | |
| 그 밖의 영업표지 | PARKGONG | 현재 사용하고 있는 BI |
| → n= oum | ② 피에스씨 네트웍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 |
| | PSC Networks |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 |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 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원, 부가세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10,972,133,082 | 9,736,064,340 | 1,236,068,742 | 6,756,347,598 | 915,515,141 | 448,790,968 |
| 2022년 | 11,408,579,688 | 9,150,863,003 | 2,257,716,685 | 7,130,815,745 | 1,220,314,683 | 984,488,921 |
| 2023년 | 10,969,986,744 | 8,161,709,863 | 2,808,276,881 | 6,857,492,145 | 854,531,677 | 618,224,945 |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 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당 사의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피에스씨네트웍스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 액 중 일부에 해당하며, 금액으로 표기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당 사의 임원은 모두 가맹사업 관련 임원이며,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은 없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임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ΛΙΞ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이름 | | 기간 | 재직 회사 및 직위 | | |
| 박효원 | 대표이사 | 2024.03.05. ~ 현재 | ㈜피에스씨네트웍스 대표이사 | | |
| 작 보 전 | 네표이자 | 2012.10.10. ~ 2024.03.04. | ㈜피에스씨네트웍스 사내이사 | | |
| 박승철 | 이사 | 2024.03.05. ~ 현재 | ㈜피에스씨네트웍스 사내이사 | | |
| 국주결 | | 2002.01.01. ~ 2024.03.04. | ㈜피에스씨네트웍스 대표이사 | | |
| 박서윤 | 이사 | 2012.10.10. ~ 현재 | ㈜피에스씨네트웍스 사내이사 | | |
| 조순옥 | 감사 | 2002.01.01. ~ 현재 | ㈜피에스씨네트웍스 감사 | | |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 당 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 | 수(명) | 직원수(명) | |
|---------------|-----|------|--------|--|
| 시점 | 상근 | 비상근 | 역전구(8) | |
| 2023년 12월 31일 | 3 | 1 | 19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했던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상호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업종 | 가맹사업기간 | 사업내용 |
|--------------------------|-------------------|---------------|--------|----------------|-------------------|
| 가맹본부 ㈜피에스씨네트웍스 | 박승철헤어 스투디오 | 20080100674 | 헤어 | 1997.05.17.~현재 | 동일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
| 가맹본부 ㈜피에스씨네트웍스 | MI(H 4FIII | 20150869 | 헤어, 뷰티 | 2010.12.01.~현재 | 동일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
| 계열회사 ㈜스타힐스뷰티 | 계열회사 박승철위그 | | 가발 | 2020.12.23.~현재 | 다른 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 사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 (등록신청자) | 존속기간 만료일 |
|-------------------|------|----------------------------------|--|----------------|-------------|
| 상표(서비스표) 박공 | 제44류 | 출원 2014.12.08. 등록 2015.12.11. | 출원 제4120140051018호 등록 제4103412940000호 | ㈜피에스씨 네트웍스 | 2025.12.11. |
| 상표(서비스표) PARKGONG | 제44류 | 출원 2014.12.08. 등록 2015.11.23. | 출원 제4120140051017호 등록 제4103390090000호 | ㈜피에스씨 네트웍스 | 2025.11.23. |

- ※ 당 사의 지식재산권은 현재 ㈜피에스씨네트웍스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 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 사의 지식재산 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박공헤어』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6년 12월 31일

※『박공헤어』직영사업을 시작한 날:해당 없음

2. 『박공헤어』 연혁

☞ 『박공헤어』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피에스씨 네트웍스 | 박공헤어 | 박승철 | 2016.12.31.~2024.03.04.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69(신사동) |
| ㈜피에스씨 네트웍스 | 박공헤어 | 박효원 | 2024.03.05. ~ 현재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69, 3층(신사동) |

3. 『박공헤어』업종

☞ 『박공헤어』 업종의 대분류 및 소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영업표지 | 업종 |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 | 박공헤어 | 서비스업 | 이미용 | 헤어 컷, 펌, 염색 | | |

- 4.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 지방 자치 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지역별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 TICH | | 2021.12.31 | • | | 2022.12.31 | • | | 2023.12.31 | • |
|------|----|------------|------|----|------------|------|----|------------|------|
| 지역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15 | 15 | 0 | 13 | 13 | 0 | 13 | 13 | 0 |
| 서울 | 10 | 10 | 0 | 10 | 10 | 0 | 10 | 10 | 0 |
| 부산 | - | - | - | 1 | 1 | 0 | 1 | 1 | 0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인천 | 2 | 2 | 0 | 1 | 1 | 0 | 1 | 1 | 0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3 | 3 | 0 | 1 | 1 | 0 | 1 | 1 | 0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박공헤어』직영점 및 가맹점의 자세한 현황은 당 사에 비치되어 있는 점포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 사업연도 | 연초 |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
| 2021년 | 14 | 2 | 1 | 0 | 0 | 15 |
| 2022년 | 15 | 1 | 1 | 2 | 0 | 13 |
| 2023년 | 13 | 1 | 0 | 1 | 2 | 13 |

-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의 총 수
- ☞ 해당 가맹사업 외에 현재 영업 중인 직영 및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_ · QQ H XI | | 업종 | 가맹사업 | 직영점/가맹점의 총 수(단위:개) | | | |
|------------------------------|---------------|-------------|------------|-------------|--------------------|-------------|-------------|--|
| 상호/이름 | 6 급표시 | 등록번호 | H <u>O</u> | 시작일 | 2021.12.31. | 2022.12.31. | 2023.12.31. | |
| 가맹본부 ㈜피에스씨 네트웍스 | 박승철헤어 스투디오 | 20080100674 | 헤어 | 1997.05.17. | 1/200 | 1/205 | 1/200 | |
| 가맹본부 ㈜피에스씨 네트웍스 | 헤어그라피 | 20150869 | 헤어, 뷰티 | 2010.12.01. | 0/1 | 0/1 | 0/1 | |
| 계열회사 ㈜스타힐스 뷰티 | 박승철위그 스투디오 | 20171460 | 가발 | 2020.12.23. | 15/6 | 15/6 | 15/6 | |

7.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원, 부가세미포함)

| | 총 | 연간 평균 | 군 매출액 | 상현 | ŀ | 하취 | 한 | 산출 |
|----|----------|-------------|----------------|-------------|----------------------------|-------------|----------------------------|----------|
| 지역 | 가맹점 수 | 총매출액 | 면적 (3.3m2)당 | 총매출액 | 면적 _(3.3m2) 당 | 총매출액 | 면적 _(3.3m2) 당 | 가맹점 수 |
| 전체 | 13 | 246,978,089 | 10,028,547 | 563,080,500 | 16,664,668 | 81,062,818 | 2,494,706 | 13 |
| 서울 | 10 | 283,847,934 | 11,426,075 | 563,080,500 | 16,664,668 | 101,421,636 | 5,071,082 | 10 |
| 부산 | 1 | - | - | - | - | - | - | 5곳 미만 |
| 대구 | _ | - | - | - | - | - | - | 5곳 미만 |
| 인천 | 1 | - | - | - | - | - | - | 5곳 미만 |
| 광주 | _ | - | - | - | - | - | - | 5곳 미만 |
| 대전 | _ | - | - | - | - | - | - | 5곳 미만 |
| 울산 | _ | - | - | - | - | - | - | 5곳 미만 |
| 세종 | - | - | - | - | - | - | - | 5곳 미만 |
| 경기 | 1 | - | - | - | ı | - | - | 5곳 미만 |
| 강원 | _ | - | - | - | - | - | - | 5곳 미만 |
| 충북 | - | - | - | - | 1 | - | - | 5곳 미만 |
| 충남 | - | - | - | - | ı | - | - | 5곳 미만 |
| 전북 | - | - | - | - | 1 | - | - | 5곳 미만 |
| 전남 | - | - | - | - | - | - | - | 5곳 미만 |
| 경북 | - | - | | - | | - | - | 5곳 미만 |
| 경남 | - | - | - | - | - | - | - | 5곳 미만 |
| 제주 | - | - | - | - | - | - | - | 5곳 미만 |

※ 당 사의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사용한 POS 현황**]을 기준으로 **13개 가맹점**에서 산출한 매출액을 당 사가 연간 평균 매출액으로 추정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영업개월 수가 6개월 미만인 일부 가맹점의 매출액은 개점 초기 매출로 매출액을 추정하는 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영업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인 가맹점 매출액은 당 사가 월 평균 매출액 산정 후 이를 연간 평균 매출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당 사가 추정한 매출로 실제 가맹점에서 올린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면적_(3.3m*)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연간 평균 총매출액/평균 가맹점 면적_(m*)*3.3] 산식으로 추정하였으며, 위 표에 기재된 상한과 하한 내역은 지역별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을 올린 매장의 매출 액을 면적_(3.3m*)당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참고로, <u>실제 매장 크기는 최저 구. 12평부</u> 터 최고 구. 35평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또한, 위 추정 매출액은 가맹점이 위치한 지역 및 상권, 실제 매장의 크기, 실제 운영한 영업개월 수,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이 상이하므로 전국 평균 매장의 평균 매출액이 아니며, 귀하가 실제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위의 추정 자료는 「가맹사업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귀하가 요청할 경우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 ☞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일)

| 연도 | 영업 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년 | 13 | 1,560 |

- ※ 당 사의 평균 영업기간은 최초가맹점 계약체결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으로 기재되었 기에 양도양수 및 명의변경 매장의 경우 최초가맹점 계약체결일로부터 산정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 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 해당 없음 : 당 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 직전 사업연도 말『박공헤어』와 관련하여 광고·판촉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미포함)

| 구분 | 수단 | 기간 | | 지출 비용 | |
|----|-----|-----|-------------|-------------|-----|
| 丁正 | 구근 | 기인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합계 | | | 133,770,787 | 133,770,787 | 0 |
| 광고 | 비공개 | 비공개 | 133,770,787 | 133,770,787 | 0 |
| 판촉 | 비공개 | - | - | - | - |

※ 위 금액은 ㈜피에스씨네트웍스의 작년 말 기준 손익계산서 상 광고선전비 계정 내역이며, 이 금액은 ㈜피에스씨네트웍스 및『박승철헤어스투디오』,『헤어그라피』,『박공헤어』 브랜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소요된 총 비용으로 각 브랜드별 금액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박공헤어**』 만을

위해 소요된 광고 및 판촉 금액은 이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 당 사가 정한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지점 | 소재지 | 전화번호 |
|---------|----------|------------------|--------------|
| KB국민은행 | 본점 수신상품부 |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 032-528-9311 |

2) 가맹금 예치절차

☞ 당 사가 정한 예치 기관의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i | 내용 | | | |
|--------------------|--------------------------|--|--|--|--|
| | 매장 직접 방문 시 |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개인상품부)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 | | |
|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 인터넷 뱅킹 이용 시 |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킹(www.kbstar.com) 접속 → ③ (기업서비스)클릭 → ④ (가맹금예치제도)클릭 → ⑤ (가맹검사업자)클릭 → ⑥ (가맹금예치금 예치)클릭 → ⑦ 약관 내용 확인 후 약관에 동의 → ⑧ [가맹본부 사업자번호] 입력 후 (가맹본부 조회)클릭 → ⑨ (가맹본부 상호)클릭 후 가맹금 예치금액,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가맹계약체결일 입력 → ⑩ (가맹금예치)클릭 후 종료 → ⑪ 다시 인터넷뱅킹을 로그인 후 (가맹금예치제도)클릭 → ⑫ (예치내역조회/승인)클릭 후 승인 → ⑬ 가맹금예치 완료 | | | |
| 국민은행 계좌가 | 없는 사업자 | 국민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 | | |
|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 본인이 개설시 대리인 개설시 |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 | |

<참고>

- *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입금을 위해서는 가맹점사업 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이 필수입니다.
- * 인터넷뱅킹 가입은 대리인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여 본인이 직접 국민은행에 방문하셔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 국민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맹금예치에 관한 업무는 매장 업무시간(09:00~16:00) 에만 가능하며 휴일 및 토요일에는 불가합니다.
- ※ 귀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 관련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정보

당 사는 예치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은행기관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동시에 선정할 수 있으며, 기타 여건에 따라 당 사는 은행에 예치를 요청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증권을 제시하여 당 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당 사가 체결한 피해보상보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보험인(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 | |
| 보험계약자 | ㈜피에스씨네트웍스 | 가맹본부 |
|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 가맹점사업자 | |
| 보험기간 |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 |
| 보험금액 | 예치금액 | |
| 보장범위 |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
| 지급조건 |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의무 불이행 | |
| 보험금의 수령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 경유→보험회사 접수→보험회사 조사→지급 여부 결정→보험금 지급 | |

※ 당 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 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 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여부

당 사와 당 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당 사와 당 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당 사와 당 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박공헤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귀하와 협의한 별도 구입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 : 개시지급금, 예탁금, 할부금의 첫 지불액, 선급임차료, 설비구입대금 등 명칭이 어떻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 또는 계속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당 사의 최초 가맹금은 영업지역 규정에서 정하는 일반상권 매장과 특수상권 매장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 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합계 | 7,700,000 ~ 22,000,000 | | | | (예외조건) |
| 가맹비 | 7,700,000 ~ 22,000,000 | 계약체결 후 1일 이내에 예치 | 반환 안됨 |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

- (1) 가맹비 대가 내역 : 1. 당 사가 정하는 기준의 가맹점운영권 사용 허락 (50%), 2. 영업지역 부여 (10%), 3. 입지 선정 시 조언 (5%), 4. 개점 시 가맹점 운영 및 영업 노하우 제공 (10%), 5. 개점 시 영업활동 지원 (5%), 6. 개점을 위한 교육 (10%), 7. 가맹점 운영을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등 각종 자료 제공 (10%)
- (2) 가맹비 반환 조건
- 가. 개점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 ☞ 귀하가 가맹비 입금 후 개점 전 당 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 사는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가맹비에서 정산한 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해지 요청일 기준 | 위약금 |
|-----------------|----------------|
| 계약체결일 ~ 1개월 이내 | 가맹비 총 금액의 3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가맹비 총 금액의 5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가맹비 총 금액의 80% |
| 6개월 초과 | 가맹비 총 금액의 100% |

- ※ 귀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당 사와 별도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개점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비 총 금액은 당 사의 손해배상액으로 정산되며, 귀하는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점 전까지 당 사의 귀책사유 없이 귀하 전부의 귀책사유만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비 총 금액은 당 사의 손해배상액으로 정산되며, 귀하는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개점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가맹비는 계약체결 후 귀하의 개점 업무를 지원하는 1회성 비용으로 가맹점 영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 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반환 조건 |
|-------------|-----------|-----------------|---|--------------------|
| 합계 | 5,000,000 | | | |
| 계약이행 보증금 | 5,000,000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당 사 제공 물품 대금 미납 및 파손, 상표사용료 등 가맹금 미납, 계약 위반에 따른 당 사의 손해배상 |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

(1)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및 반환 조건

가.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조건 : 당 사가 제공하는 물품 대금 및 파손, 상표사용료, 광고·판촉 분담금, 교육·훈련비 등의 미납액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담 보

나.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조건 : 계약의 기간 만료 및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영업표지 철거 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 및 손해배상액 정산 후 잔액 상환

(2) 계약이행보증금 추가 규정

- 가. 계약이행보증금은 보증금 성격으로 계약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나. 계약이행보증금 금액은 귀하의 성실한 계약이행 및 위반 횟수나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 합계 | 12,700,000 ~ 27,000,000 | |
| 가맹비 | 7,700,000 ~ 22,000,000 | 부가세포함 |
| 계약이행보증금 | 5,000,000 | 부가세없음 |

- ※ 당 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 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 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 | | | ·액 | | |
|------|------|-------------------------------------|-------------------------------------|--------------------------------------|-----------------------|
| 구분 | 지급대상 | 면적 99m ² 당 (구. 약 30평) | 면적 3.3m ² 당 (구. 약 1평) | 지급 기한 | 비고 |
| 합계 | | 74,470,000 | 2,482,333 | | |
| 인테리어 | 협력업체 | 66,000,000 | 2,200,000 | 시공계약일 40% 목공사완료일 40% 시공완료일 20% | 본 공사에 한함 (별도공사 있음) |
| 간판 등 | 협력업체 | 5,500,000 | 183,333 | 시공완료일 | |
| 초도물품 | 협력업체 | 2,970,000 | - | 물품 주문 시 | 상품브랜드 준수 |

-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 사가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 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 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인테리어 직접 시공 시 도면설계 및 관리감독비 부담
- ☞ 귀하는 인테리어 도면설계 및 시공 시, 가맹사업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 사가 정한 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 사의 노하우가 담긴 도면설계는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가 진행하며, 귀하는 도면설계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시공계약 익일까지 당 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 매장 크기 | 도면설계비 | 비고 |
|---|---------|------------------------------|
| 132m²(구. 약 40평) 미만 | 132,000 | 실측 면적 |
| 132m²(구. 약 40평) 이상 ~ 198m²(구. 약 60평) 미만 | 121,000 | 3.3m ² (구. 약 1평)당 |
| 198m²(구. 약 60평) 이상 | 110,000 | 기준 |

- 당 사의 도면설계에 따른 인테리어 시공은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에서 진행하거나 귀하가 직접 정한 업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정한 업체에서 시공하는 경우, 당 사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귀하는 관리감독비로 3.3m²당 금 일십육만오천원(\(\formalfont{\pi}\)165,000)<부가세 포함>을 시공계약 익일까지 당 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귀하가 인테리어를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에서 시공하는 경우 도면설계비 및 관리감독비는 면제됩니다.

(2) 필수 구입 내역

- ☞ 당 사가 전국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로 정한 프로그램(PSC-CRM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타사 프로그램 사용을 희망할 시 당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 영하기 위한 기기는 귀하가 직접 구입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사 프로그램 사용 간 발 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 미용기자재는 귀하가 직접 구입하거나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하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 품목별 당 사가 [별첨 2]에서 정한 "제조브랜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초도물품은 직접 구입하거나 당 사 또는 당 사가 운영하는 쇼핑몰(PSC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 품목별 당 사에서 정한 "상품브랜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브랜드는 당 사에서 운영하는 쇼핑몰(PSC마켓)에 공개합니다.
- ※ 그 외에도 당 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그 밖의 영업신고, 사업자등록발급, 전화개설, 컴퓨터 및 PG-CRM 기기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 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당 사 조언 요청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 | 요청이 있는 경우 |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분석 결과 및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 | 요청이 없는 경우 |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당 사가 점포개발을 대행하는 등 여타의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 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 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 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기준 | 계약·채용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 사의 필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 미성년자가 아닐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미용사 면허증 소유자 |
| 종업원 | 당 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필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 미성년자가 아닐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당 사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미용사 면허증 소유자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 ㆍ공급업체

-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설비, 기기·장비, 집기·비품 등은 귀하가 직접 구입하거나 당 사가 운영하는 쇼핑몰(PSC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 사가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로 지정하는 품목은 당 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PSC마켓)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당 사가 지정하는 품목의 자세한 내역은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1-1)-(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과 연계된 [별첨 2] 및 [별첨 3]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 필요한 경우 당 사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기기·장비, 집기·비품 등의 모델 및 규격, 사양 등을 추가로 정할 수 있고, 이의 경우 귀하는 당 사가 제시한 동일한 기기·장비, 집기·비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당 사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최초 가맹금 납부 방법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비 및 집기 등의 대금 결제 시 일시불 결제가 어려운 경우 당 사와 협의하여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 1)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판촉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리모델링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 가맹본부 | 매월 770,000 ~1,430,000 | 익 월 5일까지 | 반환 안됨 | 관리비로 비용소요 | 당 사의 중요한 영업방침 적극 준수 여부에 따라 조정 |
| 리스료 | | 해당 없음 | | | | |
| 광고 및 판촉행사 분담금 | 가맹본부 | 광고·판촉 범위에 따라 협의된 분담비율 중 귀하 분담금 | 분담금 명세서 수령 후 10일 이내 | 광고·판촉 행사 진행 후 반환 안됨 | 광고·판촉 행사진행 비용소요 | 행사별 분담 기준은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7.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교육 실비 | 교육시작 전일까지 | 반환 안됨 | 교육비로 비용소요 | 교통비, 식비, 재료비, 강사비 등 |
| 간판류 임차료 | | 해당 없음 | | | | |
| 영업표지 변경,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개선에 따른 변경 비용 | 가맹본부 | 특별한 사유 발생시 협의 분담 | 시공시작 전일까지 | 반환안됨 | 시공비로 비용소요 | <분담기준> 가맹본부:20%~40% 가맹점주:80%~60% |
| 각종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가맹본부 | 귀하의 귀책사유 발생 시 비용 산정 | 시공시작 전일까지 | 반환 안됨 | 교체·보수 비용소요 | 귀하의 귀책사유 외에는 교체보수를 요구하지 않음 |
| 재고관리비용 | | 해당 없음 | | | | |
| 회계처리비용 | | 해당 없음 | | | | |
| PG-CRM 프로그램 사용료 | 협력업체 | 매월 38,500 | 익 월 4일까지 | 반환 안됨 | 관리비로 비용소요 | 프로그램 사용 필수, 타사 프로그램 사용 시 당사 승인 필요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 15% | 약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 반환 안됨 | 지연이자 비용정산 | 해당 지급 항목의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 **상표사용료 대가 내역**: 당 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영업표지 사용권, 영업지역 보호,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경영지도, 가맹점 관리 등에 대한 대가

※※ 당 사가 위 내역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항목에 따라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맹금 반환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점포의 개점 후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제외한 점포의 내장공사 변경 시(부분 리뉴얼 공사 등)에는 반드시 당 사에 통보하여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당 사의 이미지 통일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아래 각 호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귀하는 당 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 전체의 동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및 간판 등의 설비는 당 사가 정한 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 사의 노하우가 담긴 도면설계는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가 진행하며, 귀하는 도면설계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시공계약 익일까지 당 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 매장 크기 | 도면설계비 | 비고 |
|---|---------|------------------------------|
| 132m²(구. 약 40평) 미만 | 132,000 | 실측 면적 |
| 132m²(구. 약 40평) 이상 ~ 198m²(구. 약 60평) 미만 | 121,000 | 3.3m ² (구. 약 1평)당 |
| 198m²(구. 약 60평) 이상 | 110,000 | 기준 |

- 2. 귀하는 인테리어 및 간판 등을 설비함에 있어서, 당 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당 사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 사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귀하는 관리감독비로 3.3㎡당 금 일십육만오천원(₩165,000)<부가세포함>을 시공계약 익일까지 당 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귀하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 사 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비용과 관련하여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공사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 | 단위 면적 산정이 가능한 공사 범위 ex) 샴푸존, 카운터존 | 단위 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공사 범위 ex) 테이블교체, 타일교체 등 | 혼합된 경우 ex) 샴푸존+테이블교체 등 |
|-------|---|--|---------------------------|
| 도면설계비 | 동조 제1호 준수 | 면제 | 단위 면적 산정 부분 ex)샴푸존 |
| 관리감독비 | 동조 제2호 준수 | 총 공사비용의 5% | 총 공사비용의 5% |

- 4. 귀하가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에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설비 관련 당 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모두 면제됩니다.
-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지정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_(요구) 또는 권 장_(권유)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_(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해당 없음 : 당 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 당 사는 귀하의 재고관리에 대한 감독과 회계 범위의 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매출액 현황만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참고로, 귀하가 구입한 물품 및 판매에 관한 장부, 즉 입·출고 및 매출현황 등을 품목별 및 일자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 사가 파견한 직원의 매장 내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영업장부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 해당 없음 : 귀하가 당 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_(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 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가맹본부와 계약을 유지하거나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 당 사는 귀하에게 일부 가맹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 ※ 다만, 반환하는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 사의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귀하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 사는 당 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귀하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 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 다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귀하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 사는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 사는 귀하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가맹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에 귀하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당 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 위의 조건은 귀하가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당 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 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 귀하가 운영하는 『박공헤어』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으며, 양도인이 부담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정산하여 30일 이내에 상환합니다.
-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으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당 사가 특별히 정한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이월되지 아니하고, 양도인은 이에 대해 사전에 양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유로 양도양수가 결렬되는 경우 양도인은 당 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양수인은 양도양수 등에 따라 당 사에 초래된 행정적 비용의 양수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당 사는 양수인과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계약조건과 신규 계약체결에 따른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 금 등의 최초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참고로, 당 사가 양수인과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맹사업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은 양도인의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산정하고,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 또한, 양수도 승인 시 양수인의 역량에 대한 당 사의 판단에 따라 당 사는 경영지도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경영지도컨설팅이 진행되는 양수인은 이의 비용으로 <u>금 오백오십만원~일천일백만</u> 원(₩5,500,000~₩11,000,000)<부가세포함>을 양수도 계약체결 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 사가 정한 양식의 종료신청서를 종료일 60일 이전에 당 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 사는 신청서 수령 후 사실 여부를 확인 합니다.

- 기하는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 30일 이전 가맹점 모든 고객에게 운영종료일을 문자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기간 발생한 선불권 및 정액권(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용역의 제공 전 고객으로부터 선 지급받는 금전의 성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포함)을 종료일 전까지 소진 또는 환불 처리하여야 합니다. 환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 에 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 사의 영업표지 등 당 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및 홍보사이트(블로그, SNS 등)와 온라인 홍보물 등의 기타 상징물을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철거 및 삭제 완료하여야 합니다. 철거 및 삭제를 위한 비용은 당 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하는 당 사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 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 종료 후 <u>10일</u> 이내에 반환 또는 당 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합니다. 정산 후 잔액은 당 사가 영업표지 철거 및 원상회복의무 확인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합니다.
- 전 기차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 사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 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 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귀하가 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 사의 영업표지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u>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삼십만원(₩300,000)<부가세없음>**을 부</u> 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철거 완료 후 추 가금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계약 종료 후 당 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거나 당 사의 브랜드 및 브랜드를 유사하게 변형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또한, 당 사의 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 당 사의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연히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당 사를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당 사의 명성이나 명예·신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의 사유로 당 사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손해가 있는 경우 당 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 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한 다음의 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_(요구) 또는 권장_(권유)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 하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1)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 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의 (1)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에 기재된 주요 품목 중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에서 구매한 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를 기재하며, 자세한 내역은 「별점 31과 같습니다.
- ※ [별점 3]의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간 관계의 내용,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그 직 전 사업연도에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의 내용
- ☞ 해당 없음 : 당 사는 귀하에게 당 사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요구)하는 품목이 없어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_(특수관계인 포함)와 거래할 것을 강제 $_{(\Omega P)}$ 또는 권장 $_{(\partial P)}$ 한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의 명칭, 그 경제적 이익의 내용

1) 가맹본부의 경제적 이익

당 사는 귀하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_(요구) 또는 권장_{(권유}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단위: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 해당 없음 : 당 사가 귀하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_(요구)하면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 사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이 없어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귀하는 당 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 사가 지정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명 | 당 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 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4차 :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 당 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귀하가 당 사가 지정한 상품 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 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선불권 및 정액권(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용역의 제공 전 고객으로부터 선 지급받는 금전의 성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포함) 등의 시술 품목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역을 당 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선불권 및 정액권 등의 시술 품목에 대한 운영 및 환불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 사가 지정한 상품·용역에 대하여 고객_(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 사가 제한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용역 또는 당 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 거래상대방 |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
| 경쟁업체 | 당 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및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 1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2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의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 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 귀하는 당 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시술품목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첨 4]와 같습니다.
- ※ 귀하가 [별첨 4]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시술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내역을 당 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 사는「가맹사업법」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사 및 당 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 사 및 당 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중절한 법중 함위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헤어 컷, 펌, 염색을 주 용역으로 서비스하는 업종 | 박승철헤어스투디오, 헤어그라피, 박공헤어 |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 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아래 <가맹점 위치선정 기준> 및 <참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하와 협의를 통해 정함 | 가맹계약서 별첨 [1] 지도에 점과 선으로 표기 ※ 단, 가맹점 위치선정 기준 5항의 특수상권은 영업지역에서 제외 |

☞ 당 사가 정한 가맹점 위치선정 기준 및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위치선정 기준

- 1.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제외
- 2. 주택가, 아파트 상권의 경우 주 동선 혹은 2차선 이상 도로 기준 1~2층으로 구분 (단, 본사의 판단, 코너면, 활성화 상권 등의 입점지의 경우 2층 이상은 예외)
- 3. 역세권 및 오피스 상권의 경우 상권 간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
- 4. 인구 30만 이하 혹은 신도시 상권의 경우 도시계획분석자료에 따라 상권 구분
- 5. 백화점, 복합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상급종합병원, 시장, 영화관,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 및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 휴게소, 관광지 등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영업 지역으로 구분
- 6. 점포 앞 도로가 왕복 6차선을 초과하는 도로인 경우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

참고사항

- 1. 입점예정지에 충분한 잠재고객 존재 여부
- 2. 주차장, 교통, 동선 등 접근 용이성
- 3. 입점예정지로부터 반경 500m이내 동업종의 분포현황(미용실 증감, 인구수, 마트입점 등)
- 4. 주변 상권의 발전 지속성
- 5. 입점예정 상권에 맞춘 브랜드 이미지 광고성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 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동의를 구하는 방법
- ☞ 당 사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가맹사업법」시행령 제13조의4에서 정하는 사유

-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미리 알리는 절차 | 합의하는 방법 |
|----------------------------|------------------------------|
| 재조정 사유 발생→당 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통지→30일 이내에 동의 |
| 변경(안) 작성→귀하에게 서면 통지→귀하와 합의 | 여부 회신→귀하와 합의 시 15일 이내 영업지역 |
| →영업지역 변경 완료(→가맹점사업자 미동의 시 |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가맹점사업자가 동 |
| →영업지역 변경 불가) | 의하지 않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불가) |

- ※ 영업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당 사는 귀하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귀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 해당 없음 : 당 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귀하는 당 사가 침해하지 않기로 약정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판촉 및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 사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 당 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 이나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
- ☞ 해당 없음 : 당 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 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본부가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 당 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귀하는 당 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가맹점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귀하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 사에 서면으로 요청할수 있으며, 당 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귀하에게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 사가 귀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당 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연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년 | 100% | 0% | 0% |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당 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 판매상품 비중 | |
|-------|-----------------|----------------|--|
| 2023년 | 100% | 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박공헤어』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1]년입니다.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 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 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 사는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
|--|-----------------------|
|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당 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당 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당 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된 조건 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 |

- ※ 위 표의 결과에 따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재계약 및 종료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또는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또는 D. 양자가 합의하여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또는 E. 양자가 합의하여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귀하가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당 사는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통상적인 계약조건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특별약정의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내용에서 변경되는 조건이 없는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당 사는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통상적인 계약조건으로 갱신계약 체결 및 재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또는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의 3-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표지 철거, 문서 반환,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종료 후 당 사의 노하우 및 영업비밀 유지 및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 당 사 비방금지 등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 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 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 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 당 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 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본 계약기간 중 당 사와 합의해지로 종료되지 않고, 귀하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종료되는 경우, 귀하는 계약해지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잔여기간에 대해 부담하여야 하는 <u>월 상표사용료</u>의 5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 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당 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지 사유

- 1. 귀하가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도면설계비 및 관리감독비 등 당 사와 약정한 각종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3. 귀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개점을 하지 않는 경우
- 4.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 사 또는 당 사의 지정업체가 공급한 물품 등에 관한 대금 지급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거나 계약기간 내 연체하는 경우
- 5.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상표사용료, 교육·훈련비, 광고·판촉 분담금 등의 가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하는 경우
- 6. 귀하가 당 사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 사가 정한 필수 공급 품목 및 품목별 브랜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 7. 귀하가 당 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입한 미용기자재 등이 당 사가 정한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8. 귀하가 당 사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 사가 실시하는 회의, 세미나, 교육, 경영지도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10.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 사가 정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당 사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1.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 사의 중요한 영업 방침 및 관리 감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12. 귀하가 당 사의 승인 없이 가맹점을 이전하거나 양도(사업자 명의변경 포함)한 경우
- 13. 귀하가 당 사와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14. 귀하가 당 사와 협의하여 정한 광고 및 판매 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5. 귀하가 당 사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서면 또는 온라인 시정 공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 16. 귀하가 경업을 하거나 귀하의 직원 등을 통하여 당 사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17.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4조("을"의 준수사항)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는 경우
- 18. 당 사가 귀하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 19. 당 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 20. 당 사 또는 귀하가 신의칙 위반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 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

- 1. 당 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당 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당 사 또는 귀하가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 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 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_{(15일 이 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6. 귀하가「가맹사업법」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쟁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 당 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 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이 추가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능여부(조건) | 이전 범위 | 가능시 필요한 절차 |
|----|----------|-------|------------|
| 환매 | 불가능 | - | 환매제도 운영 안함 |

| 구분 | 가능여부(조건) | 이전 범위 | 가능시 필요한 절차 |
|----|----------|----------------------|---|
| 양도 | 승인 후 가능 |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 사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명의신규 계약 또는 양수신규 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상속 | 승인 후 가능 |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 통지→당 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 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 영권 상속 완료 |

-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 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도 승인 시 양수인의 역량에 대한 당 사의 판단에 따라 당 사는 경영지도컨설팅을 진행할수 있으며, 경영지도컨설팅이 진행되는 양수인은 이의 비용으로 금 일천일백만원~이천이백만원 (₩11,000,000~₩22,000,000)<부가세포함>을 양수도 계약체결 시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범위는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당 사는 귀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 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능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
| 대리경영 | 승인 후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 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대리 경영 |
| 위탁경영 | 불가능 | - | - |

※ 당 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 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귀하는 계약기간의 존속 중 동일지역 내에서 당 사의 허락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 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귀하가 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 |
|-----------------|--------------------------------------|--|--|
| 헤어 컷, 펌, 염색을 |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 → 당 사 담당팀 | | |
| 주 용역으로 서비스하는 업종 |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완료 | | |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당 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개점시간 | 09:00 ~ 10:00 선택 | 365일 연중무휴 | 당사와 영업시간 협의 가능 |
| 폐점시간 | 21:00 ~ 22:00 선택 | 202월 건정구유 | 당사와 영업시간 협의 가능 |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연속하여 <u>7일</u>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당 사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 사의 승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당 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비고 | |
|---------------------|----------|------------------|--|
| 디자이너 - 6명, 매니저 - 1명 | 직접 근무 | 132㎡(구. 약40평) 기준 | |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당 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위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 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 한 비용을 당 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비고 |
|--------------|-------------------------|---------------------------------|-------------------------------------|---|--|
| ⊤世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군급 글시 | 기포 |
| | 상품광고 | 총 광고비의 50% | 총 광고비의 50% 중 귀하 부담분 | 광고기획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
| 광고 전체 행사 |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 총 광고비의 75% | 총 광고비의 25% 중 귀하 부담분 | † 분담분 산정 →1개월 전 분담금명세서 발송 - →수령 후 10일 이내 | |
| | 가맹점 모집광고 | 총 광고비의 100% | 총 광고비의 0% | 지급 | |
| | 판촉물 제작 | 판촉물 제작비 전체 비용의 5% | 판촉물 제작비 전체 비용의 95% | 판촉기획 | 단, 가맹본부 주관으로 가맹점사업자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행사에 한하며,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
| 판촉 전체 행사 | 상품권 수수료 |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체 비용의 5% |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체 비용의 95% |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1개월 전 분담금명세서 발송 | |
| | 할인·경품· 포인트적립 판촉행사 | 실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 | 실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95% | 군담마당세지 글당 →수령 후 10일 이내 지급 | |
| 할인카드. 멤버십 | 홍보물 제작 | 제휴서비스 안내 홍보물 기획 총 비용 | 제휴서비스 안내 POP 등 홍보물 제작 총 비용 | 할인제휴서비스기획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1개월 전 분담금명세서 발송 |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
| 제휴서비스 | 제휴할인 행사 | 제휴서비스 기획 총 비용 | 제휴서비스 시행 총 비용 | →수령 후 10일 이내 지급 | |

- ※ 당 사는 가맹사업 및 전국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및 지역 단위로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판촉행사의 목적·횟수·시기·매체 및 할인판매·경품제공·이벤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 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전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귀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인 경우 당 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 시행합니다. 이에 귀하는 당 사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동의 비율 이상 동의를 받은 광고 및 판촉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당 사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동의 비율 기준에 따라 귀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전국 및 지역 단위 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지역 광고일 경우 지역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 50% 이 상이 비용 부담에 동의한 경우 시행하고, 전국 및 지역 단위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지역 판촉행사일 경우 지역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이 비용 부담에 동의한 경우 시행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 위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개별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광고 및 판촉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당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당 사의 기획으로 전국 및 지역 판촉행사로 진행하지 않고 귀하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상품의 할 인, 경품·기념품 등 제공, 쿠폰 발행, 포인트 적립,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개별 행사를 진행 한 경우, 이 판촉행사에 대한 전체 비용은 모두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귀하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포인트 적립 등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 종료 1 개월 전부터 해당 고객에게 포인트 사용 및 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하고, 계약 종료 후 포인트 미 반환 등으로 당 사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귀하는 이를 즉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의 민원을 해결하고, 귀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일부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내역 통보 내용

당 사는 사업연도 중 귀하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통보 내용

-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_(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별 명칭, 내용 및 실 시기간
-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로 집행한 비용 및 귀하가 부담한 총액
- ※ 귀하가 세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단가 또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 당 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는 본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 사의 시스템 등 영업상 비밀이나 노하우를 본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귀하는 당 사의 시공 매뉴얼, 가맹점 운영 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당 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당 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귀하는 당 사의 계약 내용과 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본 계약 브랜드와 동일 한 업종을 창업 또는 지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4) 동조 1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 및 직원 등 피고용인에도 해당됨에 따라 이들의 귀책사유로 당 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귀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당사가 정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계약의 당 사자는 계약 상의 채무불이행 및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당 사 또는 당 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는 당 사에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본 계약기간 중 당 사와 합의해지로 종료되지 않고, 귀하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종료되는 경우, 귀하는 계약해지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잔여기간에 대해 부담하여야 하는 <u>월 상표사용료의 50%</u>를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 귀하가 당 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132㎡(구. 약30평) 기준 / 당 사 전체 시공 시 | 약 [50]일 내외 | 81,970,000 ~ 98,470,000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 D-50(1일) | 비용 없음 |
| 사업설명 및 상담 |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D-49(1일) | 비용 없음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D-42~48(7일) | 자체비용소요 |
| 최종협의 | - 임대차 계약 체결 | D-41(1일) | 자체비용소요 |
|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 예치가맹금 : 12,700,000 ~ 27,000,000 |
| 점포 실측 및 설계 | - 인테리어, 간판 등 시공비용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 D-32~34(3일) | 인테리어 착수금 : 26,400,000 |
|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가구, 시술 기기 및 집기 주문 각종 인허가 취득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인테리어 및 간판 등 시공 완료 시술 기기 및 집기 입고 완료 | D-2~31(30일) | 인테리어 중도금 및 잔금 : 39,600,000 간판 등 : 5,500,000 초도물품 : 2,970,000 |
| 개점준비마무리 | - 초도물품 입고 | D-1(1일) | 자체비용소요 |
| 개점 |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 D-day | 자체비용소요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 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 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서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 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당 사는「가맹사업법」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점포환경개선 사유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 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 가맹본부 부담 비용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비용 부담 제외 사유 |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다만,「가맹사업법」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 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 사가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귀하의 비용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귀하는 당 사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 해당 없음 : 당 사는 귀하의 가맹점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 행사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방식 및 내용
- 1) 기존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당 사는 귀하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당 사의 비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 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귀하의 비용부담으로 당 사에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당 사는 귀하여 협 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을 기재 한 경영지도계획서를 제시한 뒤 일정에 따라 경영지도를 진행하며, 경영지도 후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2) 가맹점을 양수도하는 경우
- ☞ 당 사는 귀하가 양도한 가맹점의 양수인에게 매장운영을 위한 경영지도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의 비용으로 <u>금 오백오십만원~일천일백만원(₩5,500,000~₩11,000,000)<부가세포함></u>을 양수도 계약 체결 시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 ☞ 해당 없음 : 당 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제도를 운용하는 경 우 지원 조건 및 금액
- ☞ 해당 없음 : 당 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당 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 사의 교육·훈련은 박승철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진행하므로 교육기관의 영업 방침을 함께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내용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 | 교육인원 | 비고 | |
|---------|-------|----------|-------------------------|------------------------------|--|
| 개점 전 교육 | 2일 | 가맹비의 10% | 가맹점사업자 등 매장 운영 전체 인원 | 지사장, 원장, 실장, 디자이너, 인턴 등 | |
| 기본교육 | 추후 공지 | 교육실비 | 추후 공지 | 박승철아카데미와 연계하여 | |
| 트렌드교육 | 추후 공지 | 교육실비 | 추후 공지 | 진행하며, 교통비, 식비, 재료비, 강사비 등 | |
| 특별 교육 | 추후 공지 | 교육실비 | 추후 공지 | 교육 실시 전 안내 | |

※ 당 사의 교육·훈련은 박승철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진행하므로 교육기관의 영업 방침을 함께 준수하여 하며, 교육·훈련 내용은 일정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하며, 매장을 운영하는 모든 임직원이 함께 받아 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 귀하 또는 귀하의 점포관리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 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이 중단되거나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 과 귀하의 매장에 소속되어 있는 인턴의 경우 당 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 해당 없음 : 당 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 해당 없음 : 당 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해당 없음 : 당 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별첨 1] 2023년(22기), 2022년(21기), 2021년(20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당 사가 정하는 제조브랜드 및 상품브랜드 기준

1) 미용기자재 공급 품목 - 제조브랜드 준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미용제품 공급 품목 - 상품브랜드 준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3] 당 사가 정하는 필수 공급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내역 중 공급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당 사가 공급하는 품목 중 매출액 순위 50% 미만에 해당하는 품목이기에 기 재하지 않습니다. 위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4] 당 사가 정하는 필수 시술품목 및 권장가격 내역



※ 위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법」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 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다만, 개 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